1977년12월31일
法律第 3,073号

建築法中改正法律

建築法中改正法律

建築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号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 있어서는 運営上 또는 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一団의 土地의 범위를 말한다.

第2條 第22号 중 "건축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사법에 의한"으로 한다.

第6條 第1項 및 第2項 중 "建築士法 第4条 및 第5条"를 각각 "建築士法 第4条"로 한다.

第9條의 2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団体의 条例로 정하는 基準에따라 公害防止 또는 造景을 위한 植樹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2條의 2 중 "再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屋内·屋外 또는 地下에"를 挿入한다.

第24條 중 "建築物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構造"를 "建築物의 安全 또는 防火를 위하여 필요한 建築物의 用途 構造의 制限"으로 한다.

第33條의 3 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条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특정가구 정비지구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2條 第1項 第2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国家安全保障上 安全上 또는 衛生上 顕著히 有害하다고 인정될 때.

第42條 第2項 내지 第5項을 각각 第3項 내지 第6項으로 하며 同条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市場·郡守는 美観地区 또는 風致地区내의 建築物로서 都市美観이나 住居 環境上 顕著히 障碍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建築委員会의 意見을 들어 改築 또는 修繕을 하게 할 수 있다.

第45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9条의2 第2項·第26条 第3項·第31条의2·第33条·第38条 및 第44条의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条例의 制定·改定 또는 廃止에 관하여는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4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8條 (用途変更) 建築物의 用途를 変更하는 行為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建築物의 建築으로 본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77년12월31일
法律第 3,074号

建築士法中改正法律

建築士法中改正法律

建築士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号와 같다.

1. "建築士"라 함은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아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業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2. "建築補助士"(이하 "補助士"라 한다)라 함은 建築士事務所에 소속하여 建築士의 事務를 補助하는 者, 중 第14条 第1号 前段에 해당하는者 同条 第2条 前段에 해당되고 2年이상의 建築에 관한 実務経歴을 가진 者, 同条 第3号 前段에 해당하고 4年이상의 建築에 관한 実務経歴을 가진 者와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에 9年 이상의 実務経歴을 가진 者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에게 申告한 者를 말한다.
3. "設計"라 함은 建築士가 設計図書를 作成하는 것을 말한다.
4. "工事監理"라 함은 工事가 設計図書 대로 実施되었는지 與否의 확인과 設計図書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

한 事項에 대한 施工方法의 指導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확인하는 行為를 말한다.

第3條를 削除한다.

第4条 및 第5条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 (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①다음 各号의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는 경우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設計를 隨伴하지 아니하는 用途變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都市計劃區域안의 特殊建築物 또는 延面積 3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
2. 都市計劃區域이 아닌 區域안의 建築許可對象 建築物
3. 2層 이상인 建築物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作成하거나 인정하는 標準設計圖書 및 特殊工法에 대한 設計圖書에 의하여 建築物을 新築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設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第5條 (權限의 委任) 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6條를 削除한다.

第7條 第1項 중 "建築士 資格考試"를 "建築士 資格試驗"으로 하고 同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外國에서 建築士의 免許를 받은 者로서 이 法에 의한 建築士와 同等한 資格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建築에 관한 資格을 取得한 者가 이 法에 의한 建築士의 免許를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資格試驗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第8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2項을 削除하며 同條 第3項중 "閣令으로"를 각각 "大統領令이"로 한다.

① 建設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의 免許를 한 때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證 및 免許手帖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9條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 法 또는 建築法·國家保安法·反共法이나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2의 罪를 犯하여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1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條 (免許의 取消) ① 建設部長官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免許를 받은 事實이 判明된 때
2.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免許證을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行使한 때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登錄取消處分 또는 閉鎖命令을 받고 계속하여 그 業을 營爲한 때

② 建設部長官은 建築士의 免許를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建築士에 대하여 聽聞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參考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理由없이 聽聞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15日 내에 免許證을 建設部長官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第12條 第2項을 削除한다.

第1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條 (應試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建築士資格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1. 教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建築에 관한 所定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7년 이상의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 또는 研究經歷을 가진 者
2. 教育法에 의한 專門大學·初級大學·專門學校 또는 實業高等專門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所定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9년 이상의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3. 教育法에 의한 高等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所定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12年 이상의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4.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에 관하여 16年 이상의 實務經歷을 가진 者
5. 補助士로서 5年 이상 建築士事務所에 소속하여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에 관한 補助實務經歷 이 있는 者

第15條를 削除한다.

第16條 및 **第17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16條 (試驗科目 등) 建築士資格試驗의 試驗科目·試驗方法·經歷의 인정基準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手數料) 建築士資格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8條를 削除한다.

第20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建築士는 誠實히 業務를 수행하여야 하며 建築物의 美觀, 機能 및 構造上支障이 없도록 設計하고 建築物의 質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1條중 "1級建築士 또는 2級建築士인 표시를 하고"를 削除한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 (設計圖書의 申告) 建築士協會의 會員은 그가 著作한 設計圖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士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2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 2 (登錄의 取消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계속)

① 第11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登錄의 取消處分이나 閉鎖命令을 받은 建築士는 그 處分전에 契約을 締結한 業務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建築士는 그 處分內容을 遲滯없이 建築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는 그 業務를 完成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建築士로 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20日 내에 限하여 委託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④ 建築士는 建築主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契約을 解止할 때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業務에 대한 상당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第2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 (登 錄) ① 建築士가 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單獨 또는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정하여 建設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士와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登錄節次·登錄事項·登錄證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3條의 2 (合同事務所) ①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同建築士事務所(이하 "合同事務所"라 한다)는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 合同事務所를 登錄한 者가 아니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의 建築士業務는 행할 수 없다.

③ 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同事務所를 登錄한 者에 대하여 建築行政에 필요한 調査 및 檢査業務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合同事務所를 登錄한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第24條 本文 중 "地方長官"을 "建設部長官"으로 하고 "登錄을 申請하는 者" 다음에 "(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인)"을 挿入하며, 同條 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 法 또는 建築法에 違反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27條 第1項중 "建築士事務所所在地 기타 閣令으로"를 "建築士事務所所在地·補助士 기타 大統領令이"로 하고 "管轄地方長官"을 "建設部長官"으로 하며 同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7條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建築士名簿"는 "建築士事務所登錄簿"로 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의 取消 또는 閉鎖命令)

① 建設部長官은 建築士事務所의 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建築士事務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받은 事實이 判明된 때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免許가 取消된 때 (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人의 建築士免許가 取消된 때)
3. 이 法에 의한 業務범위를 違反하여 業務를 행한 때
4. 建築士事務所에 속하는 者로서 建築士가 아닌 者가 당해 建築士事務所의 業으로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한 때
5. 第2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6. 第23條의 2條3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怠慢히 한 때
7. 第24條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때
8.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때
9. 第2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不誠實한 行爲를 한 때
10. 이 法 또는 建築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11. 建築士協會가 登錄의 取消 또는 閉鎖命令을 建議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 業務를 營爲할 수 없다.

第29條 本文 중 "地方長官"을 "建設部長官"으로 하고 同條 第3號 중 "閣令으로"를 "大統領令이"로 한다.

第30條 第1項 중 "地方長官"을 "建設部長官"으로 하고 同條 第2項 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32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建築士協會는 郡마다 建築士事務所를 設置하도록 會員에게 勸奬하여야 한다.

第33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第2項을 第3項으로 한다.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士協會에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35條 중 "閣令"을 "大統領令"으로 하고 同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建築士協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8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8條의 2 (監 督) ① 建設部長官은 建築士協會에 대하여 建築物에 관한 調査·研究를 하게 하거나 業務上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建設部長官은 建築士協會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에 違反하거나 定款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組織과 運營의 改善 또는 任員의 改選을 命할 수 있다.

第8條 第4項중 "前項"을 "第3項"으로 하고 第13條第2項 및 第19條 第2項 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24條 중 "前條"를 "第23條"로, 第29條 第1號 중 "前條"를 "第28條"로 한다.

第39條 本文 중 "3萬원"을 "100萬원"으로 하고 第2號 중 "또는 第5條"를 削除한다.

第40條 本文 중 "1萬원"을 "30萬원"으로 한다.

第41條 중 "3,000원"을 "5萬원"으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한 1級建築士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로 본다.

③ (同 前) 종전의 規定에 의한 2級建築士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資格을 取得할 때까지 다음 各號의 建築物에 한하여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다.

1. 延面積 1,500平方미터 이하인 建築物
2. 3層 이하인 建築物

④ (同 前) 종전의 規定에 의한 2級建築士에 관하여는 이 法 중 第8條 第10條 내지 第12條 및 第19條 내지 第42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⑤ (同 前) 종전의 規定에 의한 1級建築士 및 2級建築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免許證, 同免許手帖 및 登録證등을 再交付받아야 한다.

住宅建設促進法改正法律

1977. 12월31일
法律第3,075號

住宅建設促進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住宅建設促進法

第1條 (目 的) 이 法은 住宅이 없는 國民의 住居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고 모든 國民의 住居水準의 向上을 期하기 위하여 住宅의 建設·供給과 이를 위한 資金의 調達·運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基本原則) 國家는 國民의 住居生活의 安定과 向上을 보장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綜合的으로 計劃實施하여야 한다.

第3條 (用語의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國民住宅"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住宅銀行 또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調達하는 資金을 支援받아 住宅이 없거나 老朽된 住宅을 改良하고자 하는 國民에게 低廉한 家賃 또는 價格으로 賃貸 또는 分讓(이하 "供給"이라 한다) 되거나 改良되는 住宅을 말한다.
2. "住宅"이라 함은 國民住宅과 國民住宅이외의 住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 이상의 集團으로 建設하여 供給되는 住宅을 말한다.
3. "事業主體"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와 第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한 住宅建設事業者를 말한다.
4. "附帶施設"이라 함은 電氣·道路·上下水道 기타 이에 準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 또는 設備를 말한다.
5. "福利施設"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市場, 醫療施設, 共同沐浴場, 集會所 기타 居住者의 生活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共同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幹線施設"이라 함은 住宅團地내의 基幹이 되는 附帶施設과 그 附帶施設을 당해 住宅團地밖에 있는 同種의 基幹施設에 連結시키는 施設을 말한다.

第4條 (住宅建設綜合計劃등) ① 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한 住宅建